# 스마트제조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노용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825 발의연월일: 2022. 6. 8.

발 의 자:노용호·강민국·김용판

김정재 • 박대수 • 유경준

이양수 · 조명희 · 지성호

한기호 • 한무경 의원

(11인)

###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세계 각국은 침체된 제조업을 부흥하기 위해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등 혁신적인 제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 을 기울이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이 수출의 80%, GDP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 편이며 세계 5위 수준의 국가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처럼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견인해온 근간으로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제조업의 축적된 경험과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반인 만큼 제조업의 혁신은 필수적임.

하지만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자금력과 생산성이 낮아 대기업과의 격차가 점차 확대되어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디지털 수준이낮은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제조 현장의 디지털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우리나라도 그간 스마트공장 보급을 통해 중소 제조기업의 제조혁신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아직 디지털 전환 수준이 기초 단계에 머물러 있고 개별 공장 단위로 쌓이고 있는 방대한 제조데이터를 국가 단위의 빅데이터로 수집·분석하여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 향상에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와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함.

또한, 중소기업의 제조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 수요는 높으나 개별 중소기업에 대한 디지털 전환 지원 및 육성, 제조데이터의 생산·수집·가공·분석·공유·유통 등 중소기업 제조데이터에 특화한 지원 제도를 규정하는 법률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따라 중소 제조기업이 민간 차원에서 스스로 디지털 전환 인프라를 구축하기까지는 부담이 높아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중소 제조기업이 스마트제조혁신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친환경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제조산업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제조경쟁력을 강화하

- 기 위한 법의 제정 목적을 밝히고,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부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 나.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스마트 제조혁신심의위원회 운영, 지역에 특화된 정책 추진을 위한 스마트 제조혁신 지역협의회 구성·운영, 사업을 수행하는 추진기관 지정 등 정책추진 체계를 구축함(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 다.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을 위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기술경 쟁력을 제고하며,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협력 촉진, 산·학·연 공동 스마트제조혁신 지원, 스마트공장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 라. 제조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제조데이터 플랫폼의 구축·운영과 제조데이터의 제공계약을 지원하며, 제조데이터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함(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 마. 가치사슬이 밀접하거나 공통의 목적 또는 이해를 갖는 기업이 업 종과 지역의 구분 없이 디지털 기술로 연계 협력할 수 있도록 디지 털 클러스터 구축을 육성함(안 제20조).
- 바. 스마트공장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을 공급하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창업, 연구개발, 국내외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함(안 제21조).
- 사. 표준 보급 확산, 보안 강화,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 교육 및 홍

- 보, 근로환경 개선, 우수기업 선정·지원, 금융지원, 조세에 대한 특례, 협회 설립 등 제조분야 디지털 전환 기반을 조성함(안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30조 및 제31조, 제33조).
- 아. 제조분야 디지털 전환 관련 중소기업의 선진기술 개발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국제협력, 해외 협력모델 개발을 지원함(안 제28조 및 제29조).
- 자.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 활동에 필요한 경우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및 스마트제조혁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 차.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추진기관·전문기관에 대한 보고와 검사, 추진기관·전문기관 지정 취소 등을 위한 청문,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 자료요청, 지원사업 참여 제한과 사업비 환수, 권한 의 위임·위탁 등을 규정함(안 제34조부터 제40조까지).

법률 제 호

# 스마트제조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제조분야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친환경 일자리 창출, 근로환경의 개선,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중소기업의 제조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 2. "스마트제조혁신"이란 중소기업의 제조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을 융합하여 제품개발, 제조공정, 유통관리, 기업경영방식 등을 개선하는 활동을 말한다.
  - 3. "제조데이터"란 제품의 기획·설계·제조 등 제조과정부터 제품의 유통, 마케팅, 유지·관리 등 활용 과정까지 기업이 생산, 보유, 활용하는 데이터를 말한다.
  - 4. "제조데이터 플랫폼"이란 제조데이터의 생산·수집, 가공·분석, 공유·유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을

말한다.

- 5. "디지털 클러스터"란 가치사슬이 밀접하거나 공통의 목적 또는 이해관계를 갖는 기업 등이 상호연계와 협력을 위하여 업종과 지 역의 구분 없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형성한 협업체를 말한다.
- 6. "스마트공장 설비등의 공급기업"이란 스마트공장의 구축 및 운영 에 필요한 설비,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등을 공급하는 기업을 말한다.
- 제3조(정부 등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따른다.
  - ② 제조데이터가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또는 중소기업기술(「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을 말한다)을 포함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2장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 3. 제조데이터의 활용 촉진을 위한 사항
  - 4.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법 · 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6조(스마트제조혁신심의위원회) ①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지원정책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 3. 스마트제조혁신에 관한 법령·제도 및 규제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 4. 제조데이터 활용 촉진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5. 스마트제조혁신에 따른 생산성 향상 및 생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역협의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에 특화된 스마트제조혁신 정책추진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1. 지역에 특화된 스마트제조혁신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 2.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
  - 3.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지원을 위한 지역의 산·학·연 연계에 관한 사항
  - 4. 지역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지역의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지역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추진기관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추진기관을 지정할 수있다.

- ② 추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스마트제조혁신 정책 수립의 지원
- 2. 스마트제조혁신 사업 지원
- 3. 스마트제조혁신 추진을 위한 기업 및 공공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 4. 디지털 클러스터 조성 지원
- 5.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위탁업무
- 6. 그 밖에 추진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수행 및 추진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추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⑤ 추진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 혁신 및 제조데이터 관련 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스

마트제조혁신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 및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대상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장 스마트제조혁신 지원 및 기반조성

- 제10조(스마트제조혁신 촉진)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 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 사후관리 지원
  - 2. 스마트제조혁신 기술경쟁력 제고
  - 3.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대기업간의 협력 촉진
  - 4. 산 학 연 공동 스마트제조혁신 지원
  - 5. 제조데이터의 활용 촉진
  - 6.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지원
  - 7. 스마트공장 설비등의 공급기업의 육성
  - 8. 스마트제조혁신 전문인력의 양성 및 공급
  - 9.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교육 및 홍보
  - 10.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
  - 11.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업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기술경쟁력 제고)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스마트제조혁신에 필요한 연구개발
  - 2. 기술개발의 효율화를 위한 실증기반 구축
  - 3. 개발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 4. 정보통신기술 등을 보유한 벤처기업을 스마트공장 설비등의 공급 기업으로 육성
  - 5.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 기술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중소기업과 중견기업·대기업 간의 협력 촉진) ① 중소벤처기 업부장관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대기업 간의 협력을 통한 스마트 공장 구축, 기술이전, 공동기술개발, 공동 신규시장 개척, 우수 전문 인력 지원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산·학·연 공동 스마트제조혁신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은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기관 또 는 단체가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산학협력 지원사업과 중 소기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지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 5. 국립 및 공립 연구기관
  - 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 공단
  - 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 진흥원
  - 8.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마트공장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한 대상, 확인기준, 확인방법 등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제조데이터 거래 환경 조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조데이터 의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제조데이터 거래에 참여하는 제조 중소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 제16조(제조데이터 활용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제조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수 있다.
  - 1. 제조데이터의 생산 수집
  - 2. 제조데이터의 가공·분석
  - 3. 제조데이터의 공유 · 유통
  - 4. 제조데이터의 표준·품질관리
  - 5. 그 밖에 제조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조데이터 활용 지원을 위한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 제1항 각호의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제조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

- 기업의 제조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하여 기업, 공공기관 등이 제조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18조(제조데이터의 제공계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제조데이터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기업이나 기관 간에 제조데이터 를 제공하거나 거래 등을 하는 경우 제조데이터의 활용 및 이익의 배분 등에 관한 제공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조데이터 플랫폼 운영기관이나 제조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 등은 제1항에 따라 제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조데이터를 제공하는 기업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부당한 제공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제조데이터의 제공계약 표준계약서 및 체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전문기관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사업과 그 밖에 제조데이터 활용 촉진 등 제조데이터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조데이터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2. 중소기업 제조데이터 관련 기술 컨설팅 등 지원
- 3.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제조데이터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수행 및 전문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있다.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⑤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디지털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 디지털 클러스터의 구축 및 참여기업의 육성
  - 2. 디지털 클러스터 참여기업 및 기관의 상호 연계활동의 지원
  - 3. 디지털 클러스터 참여기업 및 기관의 역량강화
  - 4. 다른 업종이나 다른 지역의 기업 및 그 지원시설 간 연계강화 활동의 지원

- 5. 그 밖에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디지털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 나 지원할 수 있다.
- 제21조(스마트공장 설비등의 공급기업 육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공장 설비등의 공급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 스마트공장 설비등의 공급기업의 창업 지원
  - 2. 스마트공장 설비등의 공급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 3. 스마트공장 설비등의 공급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
  - 4. 그 밖에 스마트공장 설비등의 공급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22조(표준 보급·확산)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표준의 개발 및 보급·확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23조(보안 강화)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보 안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보안시스템 구축

- 2. 보안 진단 및 자문
- 3. 기술보호관제서비스 제공
- 4.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 보안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24조(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 혁신 전문인력의 양성 및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전문인력 현황 및 실태 파악
  - 2.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지원
  - 3. 중소기업 재직자의 전문능력 개발
  - 4.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25조(교육 및 홍보)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교육 및 지원사업의 성과, 사업 확산을 위한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26조(근로환경 개선)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과 병행하여 근로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스마트공장 구축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및 자금 지원
  - 2.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대기업 간 근로환경 개선 협력사업 추진
  - 3.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근로환경 개선 네트워크 구축
  - 4. 그 밖에 근로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27조(우수기업 선정·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 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마트제조혁신 우수기업 및 기업의 스마트 제조혁신에 기여한 자(이하 "스마트제조혁신 우수기업등"이라 한다) 를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② 스마트제조혁신 우수기업등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지원시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국제협력)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국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 연구
  - 2. 국제 전시회 또는 학술회의 개최

- 3. 수출 또는 해외시장 진출 지원
- 4. 제조데이터의 활용 촉진과 관련된 협력체계의 구축
- 5.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29조(해외 협력모델 개발)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중소기업의 선진기술 개발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해외기업 이나 기관 등과 협력모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추진할 수 있다.
  - 1. 공동기술 개발
  - 2. 공동시장 개척
  - 3. 공동기반 구축 및 물류·보관 시스템 개선
  - 4. 기술이전 및 연구개발 · 생산 등을 위한 투자
  - 5.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해외와 협력모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30조(금융지원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금융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31조(조세에 대한 특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거나 디지털 클러스터에 참여하는 등 스마트제조혁신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32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제10조의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스마트제조혁신 활동에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활동에 필요한 규제개선(이하 "규제개선"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장은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아니한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기업에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45일 이내에는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심의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신청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속히 관련 법령의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회신한 답변 또는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와 관련한 세부사항 및 규제개선의 심사기 준.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3조(협회 설립) ①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기업, 기관 및 단체와 이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스마트제조혁신 촉진과 공동이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협회의 정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의 기재사항과 협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장 보칙

- 제34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35조(보고와 검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추진기관, 제19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대하여 업무운용 상황 등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에 검사 일시, 검사 목적 및 검사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검사받을 자에게 알 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할 때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제36조(청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제4항 및 제19조제4항에 따

라 추진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7조(자료요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스마트제조 혁신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8조(지원사업 참여 제한)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학교·기관·단체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참여 제한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 제한 기간을 감면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거나 사업에 참여하여 수행한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
- 3. 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4. 자료 및 사업결과물을 허위 또는 표절하여 제출한 경우
-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제1항에 따른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6. 그 밖에 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참여 제한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 다.
- ③ 제1항에 따른 참여 제한 사유별 구체적인 기준과 기간, 참여 제한 기간 감면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9조(사업비 환수)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학교·기관·단체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이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출연한 사업비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환수 기준 및 절차,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의 인정 및 사업비 환수액의 감면에 관

한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